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협약서

[본문]

2025. 7. 30.

국방시설본부
(가칭)푸른동화천 주식회사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 BTL사업 협약 합의서

□ 사업 개요

- 사업규모 : 간부숙소 2동(585실)
- 총사업비 / 공사기간 : ████████억 원 / 853일

□ 주요 합의내용

- 가산율(α) : ██████%, 가산금리(β) : ██████%
- 운영비 : ██████억 원 / 20년, ██████억 원 / 년
- 물가정산제 적용
 - 공사기간의 실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준공시점에 총민간투자비 산정
 - 정산주기 : 매분기별 물가변동분 정산
 - 적용지수 : 해당분기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반영
 - 물가변동분 정산시 적용할 자금투입 일정
 - 사업시행자(SPC)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착공일과 실제 예상되는 착공일의 중간시점을 착공일로 정하여 자금투입 일정산정

2025년 07월 30일

대한민국 국방부 협상단

(가칭)푸른동화천(주) 협상단



성명 : 위 정 태

성명 : 정 필 교

직 위 : 국방시설본부장

직 위 : (가칭)푸른동화천(주) 대표



목 차

전 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2
제 4 조 (해석)	13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15

제 2 장 기본 약 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5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15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6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7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7
제 11 조 (협약의 성실히행)	17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18
제 13 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19
제 13 조의 2 (총민간사업비의 변경과 민자적격성 확보)	21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22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22
제 16 조 (자금차입)	23
제 16 조의 2 (차입금의 투입)	23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4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25
제 19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25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26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27
제 22 조 (공사기간)	28
제 23 조 (공사의 착수)	28
제 24 조 (공정관리)	29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29
제 26 조 (매장유산)	30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31
제 28 조 (지체상금)	32
제 29 조 (보험가입)	32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검사)	33
제 31 조 (기성검사)	34
제 32 조 (민원처리)	34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36
제 34 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36
제 34 조의 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37
제 35 조 (부속사업)	38
제 36 조 (부대사업)	38
제 37 조 (준공전 사용인가)	38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38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39
제 39 조의 2 (하자보수)	40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0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40
제 41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41
제 42 조 (운영비의 결정 등)	42
제 43 조 (운영비의 변경)	43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44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45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46
제 47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46
제 48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운영)	48
제 49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	48
제 50 조 (경미한 사업)	48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51 조 (성과의 측정·보고)	48
제 52 조 (성과의 점검)	49
제 53 조 (성과의 평가)	50
제 54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51
제 55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51
제 56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52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57 조 (수익률의 산정)	53
제 58 조 (수익률의 조정)	54
제 59 조 (임대료의 산정)	54
제 60 조 (임대료의 조정)	55
제 61 조 (운영비의 산정)	55
제 62 조 (운영비의 조정)	55
제 63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56
제 64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56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65 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57
제 66 조 (보상업무 등)	57
제 67 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57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68 조 (위험배분의 원칙)	58
제 69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58
제 70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60
제 71 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61
제 72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63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73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64
제 74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64
제 74 조의 2 (매수청구권)	68
제 75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69
제 76 조 (해지시지급금의 결정)	69
제 77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70
제 78 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71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9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72
제 8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72
제 81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73
제 82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74
제 83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75
제 83 조의 2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75

제 13 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 84 조 (분쟁의 예방)	76
제 84 조의 2 (분쟁의 해결)	76
제 84 조의 3 (중재)	76

제 14 장 기타사항

제 85 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 및 재무모델의 변경)	77
제 86 조 (협약의 변경)	78
제 87 조 (협약의 수익자)	79
제 88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79
제 89 조 (일부무효)	79
제 90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80
제 91 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80
제 92 조 (통지)	81
제 93 조 (언어)	82
제 94 조 (준거법)	82
제 95 조 (협약의 효력)	82

별표01.	본 사업의 개요	75
별표02.	본 사업의 구조	77
별표03.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78
별표04.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79
별표05.	약정자금 투입일정	82
별표06.	보험가입계획	83
별표07.	임대료 산정방법	85
별표08.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	87
별표09.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	88
별표10.	관리운영권의 인계	90
별표11.	해지시 지급금	91
별표12.	재무모델(C/D)	92
별표13.	총사업비 조정	92

부록01.	성과요구수준서	3
부록02.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	53
부록03.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	59
부록04.	실무협상 결과물(설계)	67
부록05.	실무협상 결과물(운영)	179
부록06.	운영계획	669
부록07.	법정서류	713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전 문

주무관청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군 장병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취지하에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2023년 12월 27일 수립·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24년 6월 18일 (가칭)푸른동화천주식회사를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가칭)푸른동화천주식회사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신뢰의 바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규모는 별표01(본 사업의 개요)과 같다.
- ③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별로 당사자 간에 본 협약에서 정한 계약과 업무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구조는 별표02(본 사업의 구조)에 따른다.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1. 조사 및 설계의 수행	인허가 등 행정지원
2. 차입계약 등 재원조달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사착수 및 공정관리	업무감독 및 기성검사
4. 시설투자의 완료	준공검사 및 준공확인
5. 시설의 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의 설정
6. 시설의 임대개시	시설의 임차개시
7. 유지관리 및 운영	시설의 사용
8. 성과의 측정 및 보고	성과의 점검 및 평가
9. 차입금 상환 및 배당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10. 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인계	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의 인수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다.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

③ 본 사업시설의 최종이용자의 이용대가는 주무관청에게 귀속되며, 본 사업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주무관청에게 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산율[α]”라 함은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익률을 산정하기 위해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을 말한다.
2. “가산금리[β]”라 함은 건설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대출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금리를 말한다.
3. “건설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 개시일 전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건설이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해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6.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라 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 중 건설투자 GDP Deflator를 말한다. 다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7.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 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정해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동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또는 동법 제3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9.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11. “공사비”라 함은 본 협약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말한다.
12.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3.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4.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5.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3호)을 말하며, 그 변경 및 개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6.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61호)을 말하며, 그 변경 및 개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금융회사 등”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8. “기본재무모델”이라 함은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조건에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까지 발생한 협약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9.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금리의 산술평균값을 말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함) 만약, 신용 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 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 등급의 3년 만기인 회사채 최종 호가 유통 수익률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최종 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 호가 유통 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최종 호가 유통 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0. “**기준이자율**”이라 함은 그 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 평가 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 호가 유통 수익률을 산술 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 오입한다. 만약, 신용 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 호가 유통 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 등급의 3년 만기인 회사채 최종 호가 유통 수익률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최종 호가 유통 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 호가 유통 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최종 호가 유통 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1. “**기준재무모델**”이라 함은 기본재무모델에 운영수입, 운영비용, 실적물가상승률 등의 실적과 미래예측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2.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3. “**대리은행(또는 기관)**”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4. “**대체사업자**”라 함은 제80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된 자를 말한다.

25. “**매장유산**”이라 함은 매장유산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6. “매장유산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9호)」을 말하며, 그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7. “물가변동비”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시점(2023년 12월 27일)부터 본 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
28.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 제59조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말한다.
29.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2040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의미하며, 그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0. “민간투자법 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5089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등)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24-221호)을 말하며 그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33.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34. “민원”이라 함은 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건설기간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민원인이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요구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5. “민자적격성 재조사”라 함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민자



적격성 재조사)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말한다.

36. “**발굴조사**”라 함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에서 수행하는 영향진단 (유존지역평가)을 통해 필요성을 판단하는 보존조치로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로 구성된다.
37. “**법정 정산 경비**”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른 각종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 등 해당 법률에서 경비의 정산규정을 두는 경비를 말한다.
38.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 제 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따라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39.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본 협약과 실시계획에서 정하여 건설 및 운영되는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를 말한다.
40.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41. “**본 협약**”이라 함은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42.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3.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

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44.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서류를 말한다.
45.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
46. "사업년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 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가칭)푸른동화천주식회사를 말한다.
48.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54조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49.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소비자물가지수(시도) 전국 소계를 말한다.(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를 적용한다.) 소비자물가지수(시도) 전국 소계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50.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이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PQ결과 발표일이 속한 달의 말일(2024년 02월 09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51. “수요예측재조사”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7조(수요예측의 재조사)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수요예측의 재조사를 말한다.
52.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3. “시굴조사” 함은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이라 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를 말한다.
54.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3-293호(2023년 12월 27일)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55. “실시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하며 시행령 제16조의 첨부서류 및 관련 도서(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를 포함한다.
56.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57. “예비비”라 함은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58.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SPC운영비, 보험료, 인건비, 제경비, 운영설비대체비, 유지보수비, 검사비 및 수수료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실시협약에서 확정되어 주무관청에서 관리운영기간 동안 정부지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59.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본 협약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것에 한함.),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60.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각종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61. “**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62. “**임대형 민자사업(BTL 또는 BTL 방식)**”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방식)을 말한다.
63. “**영향진단**”라 함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64.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라 함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65. “자금제조달 이익공유”란 자금제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66. “자금제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이라 함은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포하는 자금제조달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
67. “자금조달”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민간투자자금을 조달 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자자로부터의 자본금 출자와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포함한다.
68. “자금차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69.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으로 조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약정을 포함한다.
70. “자본금”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출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71. “재무모델”이라 함은 <별표 12>(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모델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한 재무모델을 포함한다.
72. “전문기관”이라 함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 중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3. “정밀발굴조사”라 함은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를 말한다.

74.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75. “주무관청”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의 행정권한의 위임을 받은 업무 또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은 하급기관 포함)을 말한다.
76. “준공”이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77.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시 또는 착공시기의 연기 시, 그 연장기간 또는 그 연기된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78. “준공일”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9조에 따른 준공확인절차를 거쳐 준공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79. “준공전 사용인가”라 함은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준공 전 사용을 인가하고 사업시행자는 인가받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준공 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0.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의 기존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지하매설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81. “지표조사”라 함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조사를 말한다.
82. “착공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 개시일을 말한다.

83.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84.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함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 2(총사업비의 산정)의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85.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준공일 현재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각 시점별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86.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건설사업관리용역비, 각종 보험금 등),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87. “총사업비 검증 관련기관”이라 함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88조(총사업비 검증)에 따라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주무관청의 의뢰로 공사비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88. “총투자비”라 함은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경상사업비와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89. “출자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81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 승계인을 포함한다.
90. “출자예정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91. “타당성 분석”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이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의 후속 절차로서 또는 민자적격성 재조사 절차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을 말한다.
92. “표본조사”라 함은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3. “협약당사자”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제 4 조 (해석)

- ① 본 협약에 있어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이하 총칭하여“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본 협약 체결 후 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본 협약 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의 각 조문의 제목은 각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⑤ 사업시행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채권금융기관, 주무관청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⑥ 본 협약 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 및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2. 시설사업기본계획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푸른동화천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1조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다만, 본 사업시설의 수익실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무관청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주무관청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의 청구와 수령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서) 사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에 주무관청이 포함되는 '시공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직접 국가에 귀속된다.
- ②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본 사업시설 전체가 준공된 이후 민간투자법 제26조·동법 시행령 제24조와 본 협약 제39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하고 임대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하며, 임대개시되는 날은 관리운영권 설정 등록일자로 한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히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 ① 본 사업의 총민간사업비는 별표04(총민간사업비)와 같이 가격산출기준시점(2023년 12월 27일) 불변가격 금 [REDACTED] 백만원으로 한다.
- ② 실시협약 체결시 정한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별표04(총민간투자비)와 같이 준공예정일 시점가격 금 [REDACTED] 백만원이다.
- ③ 제2항의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재산정하되, 물가정산제 적용을 위한 착공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착공시점과 실제 착공시점의 중간지점으로 정하며, 본 협약상의 매 분기별 총민간사업비 투입금액에 직전분기말까지의 실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재산정한다. 단, 최종분기 직전분기말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지수 미공표시 직전 전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지수를 적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할 경우 실제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른 건설이자 변동분을 정산하기로 하며, 건설이자 변동분의 정산금액은 준공시점에 실시협약 기본재무모델에 본 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⑤ 본 협약을 근거로 하여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여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⑥ 본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금리는 [REDACTED]%(기준금리 3.59% + 가산금리[β] [REDACTED]%)이다.
- ⑦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금리의 산술평균값을 말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함) 단,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가산금리[β]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제2항 제1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의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변동하는 경우
3. 법령(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일물 규정 미연장 포함)(과세관청의 법률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포함, 단, 과세관청의 해석과 법원 판결이 상반될 경우 법원 판결이 과세관청의 해석에 우선함)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공사범위의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환경·교통·사전재해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제34조의 2(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에 따라 경비를 정산하는 경우

②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의 실제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금액이 더 낮아 용역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의 필요 여부 및 설계변경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분담금 및 부담금(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비용, 국가유산지표조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상수도, 오수, 전기분담금, 도시가스 분담금, 지역난방분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폐기물 처분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준공시 정산하며 총민간투자비에 반영한다. 또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발생시 납부 후 준공 시 정산 처리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제45조(보고 및 검사등), 동법 시행령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와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24.12.23. 환경부 예규 제759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부담금의 경감 또는 감면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제4항에 따른 감면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금액을 반드시 관계기관에 반환요청하고, 운영개시 전 총민간투자비 확정 시 배출 다음 연도 환급추정액을

정산 반영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제3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 환급액(과오납에 포함) 및 환급가산금이 운영기간 중 발생한 경우 환급 직후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신청하는 분기별 정부지급금의 임대료에 정산 반영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⑧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민간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 ⑨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 검증 관련기관에게 민간투자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비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의뢰하고, 총민간사업비 변경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총민간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⑩ 본조에 따라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본 협약에 따라 재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의 변경분은 임대료 조정 등에 반영하기로 한다.

제 13 조의 2 (총민간사업비의 변경과 민자적격성 확보)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체결 이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와 비교하여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규모 증가등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민자적격성재조사를 실시한 후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 ①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추진하며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본 협약과 재무모델에서 제시한 자금조달 조건을 최대한 준수하여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시까지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자금 조달과 관련된 출자 약정서(출자금 납부 예정 증빙 서류: 주주협약서 등) 및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서)등 자금조달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①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출자예정자 또는 출자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 및 협약 체결 시 제출한 투자확약서 등 제반 서류의 내용과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자본금을 적기에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합의하여 자금조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본 협약 체결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본금의 투입일정은 별표05(약정투자금 투입일정)와 같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재정지원금 투입 이전에 자기자본 전액을 선투입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 현재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물가정산분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실시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인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자금차입)

- ①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 자금차입계약 체결 시 본 협약과 재무모델에서 정한 자금차입조건과 비교하여 차입금액, 금리, 상환기간 또는 부채상환금 적립 조건 등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별도로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후순위채 상세조달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순위채 조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조정 요구 시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조정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 ③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초과 조달하여야 하는 사유, 자금차입의 규모 및 조달조건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8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 및 재무모델을 변경하도록 한다.



제 16 조의 2 (차입금의 투입)

- 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또는 주무관청 승인한 실시계획에서 정한 차입금 투입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무관청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별표05(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실시계획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 및 본 협약과 상충함이 없을 경우 적기에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조 제2항에 따른 타인자본 투입결과를 주무관청이 요청시 즉시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공동이행방식)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회사(이하 '설계자'라 한다),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공동이행방식)의 수행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0영업일 이내에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 ① 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의 규정과 실시계획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를 위해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과 실시계획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설계자,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법령과 실시계획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법령과 실시계획 및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노임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불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노임체불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 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물가변동 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 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관련 법령, 본 협약, 시설사업기본계획(질

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협약 체결시 협약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제외되며, 본 협약에 적용하였거나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적용하기로 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한다.

③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의 실시설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은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단, 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수준서, 질의응답서 포함), 관련법령 및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적사항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는다.(단, 초과여부 판단은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시(기본설계 포함) 동 설계의 내용이 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수준서, 질의응답서 포함), 관련법령, 사업계획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무관청이 지적한 사항은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한다. 단 부합여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합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제출시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마감자재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기준에 적합한 자재로 반영하여야 한다. 부합여부의 판단은 마감자재 기준을 제시한 주무관청에 있다. 단, 마감자재의 최종선정은 사업시행자가 시공시 생활관 1개실과 주요실에 대한 견본실(샘플 생활관)을 설치하여 반입예정 가구(Furniture)에 대한 디자인 및 자재 등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의 필요에 의한 추가설치 요구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실시설계 심의기간, 대관협의기간, 주무관청 귀책 및 불가항력사유기간 제외) 이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고,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실시계획 내용(첨부 서류 및 도면 포함)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사항을 적시하여 주무관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등) 제1항 단서에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투자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별표 11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포함).
- ⑥ 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책임은 주무관청에게 이전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 22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53일로 한다.

- ②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의 연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거쳐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한다.

제 23 조 (공사의 착수)

-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착공일 이전에 본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신고서를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계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와 각종 인허가 관련업무 및 사용부대 여건 등 착공에 필요한 제반조건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 승인 후 Fast Track 방식을 적용하여 조기 착공할 수 있다.

제 24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 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말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한 실적 누계 공정률이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누계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에 따른 공정관리 결과,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 ⑥ 공정관리는 전체 공사기간을 대상으로 공사계획을 수립하되 준공검사, 준공확인 검사 등 일정을 고려하여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주요공정이 완료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실시계획 승인서류를 제출한다.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해서는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에 따른다.
- ④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협약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또는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련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매장유산)

-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영향진단기간에 게 요청하여 영향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보고서를 주무관청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국가유산청장의 검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매장유산을 발견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관련 기관에 국가유산 발견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매장유산을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고 매장유산이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국가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장유산 발견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동 매장유산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영향진단에 따른 매장유산 보존 조치로 매장유산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정산하여 총민간사업비에 반영한다.
- ⑤ 매장유산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약 제70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본 협약 제71조에 따른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주무관청이 본 협약,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따라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증기관에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8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 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실시계획에 미반영된 경우 포함)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기성부분(또는 기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총사업비 가격기준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한다.(단,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이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주무관청에서 인수한 부분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주무관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이 총사업비의 10% 상당금액을 초과할 경우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해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되어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준공정산에 따른 총민간투자비 확정 후 15일 이내 지체상금을 산출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체상금은 주무관청의 부과 고지서에 기재된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 29 조 (보험가입)

- ①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가입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표06(보험가입계획)과 같이 가입하고 보험가입의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험가입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보험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보험료, 위험분담 등에 관한 실시협약상의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조건이 변경 시 최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분담 조건보다 주무관청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③ 사업시행자의 법령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주무관청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보험(기업휴지보험 등)은 가입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⑤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본 협약 체결 시 확정된 보험료 금액 보다 사업시행자와 보험사와의 실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금액이 더 낮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의 총사업비 또는 운영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한 금액으로 총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변경한다.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검사)

- ①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건설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시공현장에서 직접 입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정·품질·안전관리계획, 성과수준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익월 15일 이내) 주무관청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 사업계획서(제2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함)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검사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 사업계획서(제2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함)에 따라 건설되지 않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⑥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서에서 명시 되어있는 사항이 승인된 실시계획에 미반영 되어있는 경우, 협상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이를 미반영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2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②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 민원의 발생 사실과 발생 원인 등을 서면 통보한다.
- ③ 협약 당사자는 제2항의 서면 통보를 받은 이후 5영업일 이내에 민원의 처리 방법, 처리 비용 등에 대해 협의하며, 사업시행자는 위 사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 시, 민원의 발생 원인에 따른 민원의 처리 책임 주체와 민원 처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1. 본 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설계,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2. 본 협약에서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제66조(보상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처리는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는 분담 비율을 협의하여 민원처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가. 민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여 협약 당사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분리·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민원이 제1호의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설계, 시공, 운영)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다. 민원이 제2호의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보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주무관청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의 처리를 제외하고,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총사업비 항목으로 추가 반영하기로 한 경우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5호에 따라 추가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자본금 및 차입금의 추가조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 ⑥ 본 조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민원처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4 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용역비 총액 및 용역비 지급방법에 대해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의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시의 최종낙찰금액으로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업무현황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30조(업무감독 및 검사) 제3항에 따른 검사, 제31조(기성검사)에 따른 기성검사, 제38조(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완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도 당해 검사보고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민간사업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용역비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제7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따른다.

제 34 조의 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 ① 법정 정산 경비는 정산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 경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조정하고 총액은 본 협약상 정산 경비 총액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정 정산 경비, 제26조(매장유산) 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 영향진단 비용 및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제2항에 따른 감리비 차액 정산 등 정산 경비의 정산이 발생할 때마다 주무관청에 정산 경비 조정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 (부속사업)

- 해당사항 없음

제 36 조 (부대사업)

- 해당사항 없음

제 37 조 (준공전 사용인가)

- ① 본 협약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규정된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토목/조경공사를 위한 기존시설 후철거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요청에 의한 경우도 포함)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준공전 사용 및 그 절차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39조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준공전 사용인가 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이 준공전 사용인가를 한다.
- ③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기간은 본 협약 제10조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운영비용의 산정과 지급여부는 제1항에 따른 준공전 사용인가의 요구주체, 대상시설 및 운영범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기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른 유지관리 및 운영기간 동안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60일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작성한 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검사조서가 첨부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의한 준공검사 완료 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직접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본 협약상의 건설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④ 제3항의 준공확인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 및 성능의 확인을 위한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본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정부지급금의 결정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총민간투자비의 확정 및 건축물대장 생성등)을 준비하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권 개시일정에 관해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준공시점에 사업시행자는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무관청 귀책 및 불가항력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등록부 발급 전까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관리운영등록부 발급 이후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게 조치계획 등을 보고한다.
-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검사 결과 본 협약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경유하여 공사 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주무관청이 지정한 기간 내에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를 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이때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은 관리운영권 설정 등록일자로 한다.
- ⑨ 관리운영권 설정시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가입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의 피보험자에 주무관청 또는 사용부대를 포함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9 조의 2 (하자보수)

①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1. 사업시행자는 하자접수 및 처리현황을 유지하고 매월 실무협의체 및 분기 성과평가 위원회에 하자처리 결과와 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단, 정기검사와 중복될 경우 정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제출된 하자 조치계획을 미준수하여 지속적으로 미완료될 경우에는 아래 항목에 따라 하자처리를 실시한다.
 - 가. 하자처리현황/지연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현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민원관리대장(하자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며, 하자처리요청 접수일로부터 15 30일 이내에 미처리시 미완료로 판단한다.
 - 나. 사업시행자가 지연하자에 대한 하자처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2차, 3차 통보시에도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하자처리를 지연할 경우(하자 발생건수의 5% 이상)에

는 사업시행자의 업무처리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운영비중 SPC운영비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분기에 조치가 안되었을 경우 계속 정지하고, 정상적으로 완료시에는 지급정지된 SPC운영비를 정상 지급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동안 하자 정기검사를 연2회(5월, 11월) 사용부대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발생한 하자는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와 관련 하여 각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 전 본 사업 시공사, 운영사 및 사용부대의 최종점검 및 확인을 거쳐 하자보수 의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각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공사, 운영사 및 사용부대가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하자여부를 판단 후 하자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서를 사용부대를 통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조치가 완료된 후 사용부대의 최종승인을 받은 하자조치 완료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설이용가능성 평가시, 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해 본 사업시설의 이용가능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료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이용불가에 따른 임대료 차감액은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요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출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0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제 41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하기로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본 사업시설을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범위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이러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한다.

제 42 조 (운영비의 결정 등)

- ① 제61조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23. 12. 27.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 [REDACTED] 백만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09(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과 같다
 1. 유지보수비는 운영비의 41% : [REDACTED] 백만
 2. 장기수선충당금은 유지보수비의 70% : 금 [REDACTED] 백만원
※유지보수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제외 금액은 일상수선비로 편성
- ②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이 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은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운영사무실 등)곳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부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상기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표준비용에는 장래 시설의 수선·교체를 위한 장기 수선충당금을 포함하며, 다음의 각 호를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1. 주무관청은 매분기 일정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바,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사용부대)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 집행 결과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 장기수선행목의 실제 소요금액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4.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에 충당한 후 운영종료(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점에 잔여금액을 주무관청(사용부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반납한다.
5. 사업시행자 명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인하여 법인세 등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과세당국에 대한 소명,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④ 보수비의 집행여부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필요 시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검토후 부실하다고 판단시 주무관청(사용부대)은 운영현장 점검 및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43 조 (운영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운영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본 협약에 따른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단순한 노무에 따른 용역)에서 정한 용역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최저임금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9조에 따른다.)
- ② 제1항에서의 운영비 변경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변경을 통해 조정한다.
- ③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변경하기로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운영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당해 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된 건축물 외부의 시설/구조물 및 조경 식재공사를 포함함. 단, 세부계획은 본 협약 부록06(운영계획에 따름)
2.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
4. 기타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사항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이하“운영자”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자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업무에 한정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성과이행을 전제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하에 전문기관에 재위탁 할 수 있으나 유지관리 및 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임자 또는 수탁자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업무에 한정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성과이행을 전제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고, 재수탁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임자 또는 수탁자, 재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한 보험은 추가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별도 가입할 수도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 재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유지관리 및 운영, 성과평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 포함)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과 주무관청의 승인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 47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본 협약 제46조의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③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 제8장(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⑥ 합리적 근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이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른다.
- ⑦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른다.
- ⑧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결정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본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⑨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지보수비(장기수선충당금, 일상수선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시행자의 별도계좌로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 예금은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집행, 양도,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주무관청의 승인하에 적정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시에 장기수선충당금 및 일상수선비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 전부를 주무관청(사용부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반납한다.

제 48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운영)

- 해당사항 없음

제 49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

- 해당사항 없음

제 50 조 (경미한 사업)

- 해당사항 없음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51 조 (성과의 측정·보고)

-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 및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월·분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월보고서를 당해 월의 익월 5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운영개시일로부터 운영기간 2년 이내 해당).
 2. 사업시행자는 분기보고서를 당해 분기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운영개시일로부터 운영기간 2년 이후 해당).
 3. 운영비 중 SPC운영비, 보험료, 인건비, 제경비 등을 포함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일상수선비,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결과 보고 및 근거를 월/분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장기수선충당금은 20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성과의 측정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인해 성과측정의 결과로부터 사업시행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 ③ 사업시행자는 협약운영비를 근거로 한 일상수선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명세를 반기 1회 작성 후, 이를 연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52 조 (성과의 점검)

- ① 주무관청은 제51조의 월보고서를 토대로 매월 본 사업시설의 성과수준을 확인하고, 성과수준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51조의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매 분기마다 직전 분기의 성과이행상황을 검증하고, 본 협약에 규정된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성과수준 확인과 제2항의 성과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성과점검을 위해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전원장치 등 측정기기에 따른 측량
2. 샘플의 추출에 따른 검사
3. 시설의 현장에 대한 불시 검사
4. 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족 접수
5. 고객 만족도 조사

- ⑤ 주무관청은 제54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로 하여금 제2항의 성과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실무협의체는 주무관청 2명(지역시설단 1명, 사용부대 1명)과 사업시행자 1명, 전문운영사 1명으로 구성하여 월 1회 점검한다.
2. 실무협의체의 주요점검 및 확인사항
 - 가. 인계인수결과와 시설의 실제 기능·수준의 확인
 - 나. 시설물의 하자유무에 대한 점검
 - 다. 월간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확인

라. 성과측정(결과확인) 업무구분

- (1) 주무관청의 시설이용자 : 성과보고와 사실의 조사, 대조
- (2) 운영사 : 사실의 조사에 참여
- (3) 사업시행법인 : 보고서의 작성, 사실조사 참여

3.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Kick-off) : 운영 개시후 1개월 이내

가. 실무협의체 구성원간 「운영 세부요령」과 운영계획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최초회의(Kick-off)를 개최하여 회의에서 다음의 사항을 협의·확정한다.

- (1) 실무협의체 조직·구성원 확인
- (2) 사업시행자의 조직(대표이사, 인원, 업무분담)의 확인
- (3) 「운영 세부요령」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및 문제점 협의
- (4) 「실무협의체」 회의방식 및 일정, 역할 확정
- (5) 인계인수결과 확인, 시설의 성능확인 및 문제점 해결
- (6) 시설이용자의 수용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

⑥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등의 이유로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53 조 (성과의 평가)

- ① 주무관청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51조(성과의 측정·보고), 제52조(성과의 점검)에 따른 성과의 측정·보고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용성, 안전성, 내구성, 시설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 등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규정한 분야에 대해 매 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직전 분기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서비스만족도 분야의 성과평가를 위해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기로 한다.
- ④ 제1항의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의 전문기관을 선

정하고 동 기관으로 하여금 본 협약에 따라 성과평가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성과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다.

제 54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 ① 주무관청은 제53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과 본 사업시설의 주무관청(사용부대) 소속 공무원 2명, 사업시행자측 2명,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대표 2명(시설별/부대별 각 1명), 관련 분야 전문가 2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며, 평가위원장은 주무관청이 선임한다.
- ③ 성과평가위원회의 이용자대표는 해당부대에서 선정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2명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측에서 각각 1인씩 선임하기로 한다.
- ④ 성과평가위원의 구성 및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주무관청(사용부대)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55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되 평가위원장은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 ③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의 체결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부록 0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또는 기준 중에서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부록0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6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해 산정된 “매 평가대상 분기의 다음 분기의 정부지급금”을, 제 53조(성과의 평가)에 따른 매 평가대상 분기의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제8장(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임대개시 이후 “최초 1분기의 정부지급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제 8장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임대기간 중의 “최종 분기의 정부지급금”에 대해서는 당해 최종 분기의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결과도 함께 반영하여 지급한다.
- ② 본 장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내용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허위기재가 없었다면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었던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분기의 정부지급금 상당액의 2배를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감액 또는 가산지급에 관하여는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03(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 차등지급 요령)에서 제시된 당해 분기의 총 평가등급을 B등급 미만으로 평가받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합의한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을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연속하여 3분기 이상 제4항의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은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서 정한 운영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교체 요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조치계획서 제출 후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운영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본 협약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 ⑦ 본 사업시설의 하자, 운영자의 운영 미흡 등으로 시설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비용을 임대료 및 운영비에서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수선항목 및 수선주기(군 사업시설 관리훈령 제32조 제11항 및 관련 별표14)에 의하여 개량, 보수·보강시 사업시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법령에 의한 정상적인 사용제한, 제7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및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임대료 지급분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시설이용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른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지급한다.
 2. 운영비 지급분은 유용성, 안전성, 내구성, 서비스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차감지급한다.
- ⑧ 성과평가 실시후 성과평가 위원회는 서비스 성과평가를 보안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57 조 (수익률의 산정)

- ① 본 사업의 수익률은 지표금리에 가산율[a] (%)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법인세 차감전 정상 수익률이며 협약체결시의 수익률은 %이다. 다만, 본 협약체결시의 가산율[a]은 본 조의 수익률 산정시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② 임대개시시의 최초 수익률은 제3항의 지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5년 동안 적용된다.
- ③ 지표금리는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하되 제2항의 수익률 산정을 위한 지표금리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 동안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④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8조에 따라 조정된 수익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58 조 (수익률의 조정)

- ① 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이하“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가산율[a]은 임대료 지급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 ② 지표금리는 조정기준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제 59 조 (임대료의 산정)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 동안(이하“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이라 한다.)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제12조 내지 제13조)에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에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다.
- ② 임대료는 별표07(임대료 산정방법)의 원리금균등분할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③ 별표08(임대료 및 지급스케줄) 상의 임대료는 총민간사업비에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율 3%/년을 가정하여 적용한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한 총민간투자비로부터 산정되었으며, 본 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제12조(총민간사업비/총민간투자비)에 따라 재 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제5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④ 본 협약에 따른 총민간사업비 변경사유로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본 협약에 따른 임대료 산정방법에 따라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다.
- ⑤ 본 사업의 임대료 지급기간(본 사업시설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 ⑥ 본 시설이 조기 준공되거나 준공전 사용인가될 경우, 조기준공일 또는 준공전 사용인가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37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 60 조 (임대료의 조정)

- ① 임대료는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 57조(수익률의 산정)에 따라 조정되는 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 임대료 적용기간 개시(초일 포함)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을 조정기준일로 하기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매 조정기준일에 당해 임대료 적용기간 동안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는 조정기준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제 61 조 (운영비의 산정)

- ① 본 협약에 따라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는 제42조 제1항의 불변 운영비에 해당 분기의 직전분기말까지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제1항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8조 제3항에 따른다.

제 62 조 (운영비의 조정)

- ① 본 협약 별표01(본 사업의 개요)에서 제시한 본 시설에 대한 수요보다 실제 발생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운영비(변동비)의 감소부분을 감안하여 매 분기마다 운영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 ② 협약당사자간에 제1항의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0일 이내 협약의 변경을 통해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제 63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 동안 제59조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를 제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제 60조를 근거로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조정된 임대료를 제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개시 후 매 분기별로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를 본 협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따라 임대료와 일괄하여 지급한다.
- ③ 최초 임대가 분기 도중에 개시될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당해 분기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임대기간이 분기 도중에 종료 될 경우 임대기간의 마지막 분기의 초일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④ 부가자치세 면세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 64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 ① 사업시행자는 제63조(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 최종일 15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다음 분기 개시 전 최종일(휴무일일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대기간중의 최종분기의 정부지급금은 관리운영권 종료 후 최종분기에 대한 성과 평가 완료일로부터 5일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동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 ②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정한 정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본 조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정부지급금 산정시 임대료 산정에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65 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본 사업의 건설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66 조 (보상업무 등)

- ① 본 사업부지의 제공업무와 이와 관련한 지장물 보상 기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 대책사업 등은 주무관청에서 주무관청의 비용으로 본 사업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 ② 주무관청의 보상업무나 지장물 처리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67 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운영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이 때 소요된 각종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협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68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69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제74조 제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부실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따른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파산 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신청이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합병을 위한 경우 제외)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 (자본금 및 차입금)의 조달·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 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동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3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3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중단한 경우
9. 사업시행자가 제52조(성과의 점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일정기간까지의 제56조(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른 정부 지급금의 감액총액이 그 기간까지의 주무관청이 지급한 정부지급금 총액의 20%를 초과하였을 경우
11. 사업시행자가 제16조(자금차입), 제81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등 본 협약에서 정한 출자자 변경, 자금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2. 사업시행자가 제83조의 2(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에 따른 자금재조달 여건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자금재조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투자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70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행권을 몰수한 경우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4. 본 협약에 정한 정부지급금이 본 협약에 따른 지급예정일보다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착공일을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제1항에서 정한 사유와 인관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공사기간 중 총사업비 증가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운영비 증가분)을 보상하도록 한다.

제 71 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한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급금보다 낮은 수준의 정부지급금을 지급받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함.
5.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국가유산 발견, 토양오염 및 매립 쓰레기 발생지 조사/처리비용)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따른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 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총민간투자비 또는 운영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착수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

금 공사개시일을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2. 본 사업시설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되는 기간은 본 협약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3. 본 사업시설의 복구 비용이 발생하거나 유지 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민간투자비 또는 운영비가 증가한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또는 운영비가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또는 운영비가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다. 위 '가'호 및 '나'호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계약 당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④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협약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에 따라 시설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72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 72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한다.
- ②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동 청구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를 한다.
- ③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동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13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④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 사유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 ⑤ 청구가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협약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73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6년 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2. 제1호에 따른 인계시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시점에 부록0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고, 만료일에 관리운영권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게 무상으로 인계한다.

4.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10(관리운영권의 인계)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 74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의 공사착수 지연이 [3]개월 이상이 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3]개월 이상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체상금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4.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5호의 재원조달이 [6]개월 이상 지연됨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6호의 사유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본 협약의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7호의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유가 중대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8.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8호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 지연 또는 운영 중단이 [6]개월 이상인 경우
9.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9호의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성과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0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1.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1호의 자금조달 및 자금재조달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반복적인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

대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 사유의 발생 등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해지시 지급금은 주무관청 귀책사유에 준하여 지급한다.
13.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수요예측재조사, 민자적격성재조사로 시행한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 판단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무관청 또한 본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만, 본 사업 착공 이전에 수요예측재조사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해지시지급금은 건설기간 중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부지급금이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7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제7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

우

2. 국가유산과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여타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매수청구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⑤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해지사유발생통지”)를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80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 ⑦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74 조의 2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이라고 한다)은,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 75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76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받기 전이라도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시기에 본 사업시설 등 본 사업 관련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일체의 설비나 권리 등을 이전하기로 한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시지급금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시행자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받은 외에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중도해지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76 조 (해지시지급금의 결정)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11(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이 경우 기 투입 민간투자자금은 실제 투입된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협약 당사자가 합의한 민간투자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3의 전문성 있는 독립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

등하게 분담한다.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3장 (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해지시지급금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계약 당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7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① 제7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 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중인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 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제 78 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 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주무관청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 ② 본 협약의 종료는 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일방 당사자에 따른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없이 상대방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조달

제 79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

다.

-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8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 ① 제74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발생통지를 한 후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대리은행)은 서면 통지(“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추천된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한다.
- ③ 주무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대체사업자 선정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자금차입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통지”)를 보낼 수 있고, 주무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사업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는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는 마치 추천 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 81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푸른동화천식회사의 출자예정자 구성 및 출자예정지분은 별표03(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사업계획서 평가시 출자자구성의 평가요소에 따라 별도의 배점을 부여받은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당시의 출자예정자 및 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타 출자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 출자예정자 및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자예정자간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출자예정자 및 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출자예정자 및 지분의 변경 승인의 신청 이외에 본 협약에 정한 바와 다른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을 신청하여 사실상의 자금재조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2조(자금재조달의 절차) 및 제83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를 준용하기로 한다. 다만,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산정된 효과(이익)는 협약 당사자간 배분 없이 전액을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 ⑥ 제5항과 관련한 자금재조달의 범위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8조(자금재조달의 범위)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제 82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 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자본구조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⑤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자금재조달인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재조달의 사전검토 의뢰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선납한 후, 자금재조달이 성사될 경우에는 공유이익분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동부담(50:50)하기로 한다.
- ⑦ 자금재조달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 ⑧ 제4항의 실시협약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출자자변경 약정 또는 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주무관청은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과 그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변경 실시협약에 반영한다.

제 83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 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기대이익 증가분으로, 이는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본 협약 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의 기대이익증가분)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조기배당효과와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효과로 인하여 출자자의 경상투자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구성된다.
-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자금재조달의 범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공유비율, 이익의 산정방법 및 기준시점, 이익의 사용처 및 사용시점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한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

제 83 조의 2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자금차입계약 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실시협약 체결 이후 매년 3월 31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금차입계약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위 요청에 대하여 자금재조달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소명하도록 한다.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84 조 (분쟁의 예방)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실시협약을 명확하게 작성하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충실하게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84 조의 2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사업시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당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활용할 수 있고, 민간투자법 제44조의10 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할 경우에는 조정결과를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본 협약 제84조의 3(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④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 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84 조의 3 (중 재)

- ① 제84조의 2(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 ②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

한 절차에 따른다.

-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수단에 따르지 않고 협약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협약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4 장 기타사항

제 85 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 및 재무모델의 반영)

- ①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본 협약 및 재무모델을 변경하도록 한다.

1.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호 사유가 발생하여 총민간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 제43조(운영비의 변경)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비용을 변경하기로 협약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3.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착공일 연기, 공사기간의 연장,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4. 제82조(자금재조달의 절차) 제4항 및 제83조(자금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따라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재무모델 및 변경이

필요한 사유, 변경의 조건, 변경 효과 등을 산출하는 근거와 함께 변경 재무모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변경 재무모델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주무관청이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변경 재무모델을 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시정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다시 제출한 변경 재무모델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는 변경 재무모델을 첨부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민자적격성 재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변경 실시협약 체결 전 해당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6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 ⑥ 협약당사자가 제86조(협약의 변경) 제4항 각 호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협약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85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 및 재무모델의 반영)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제 87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8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89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0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

정하고 확인한다.

제 91 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의 내용 및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이하 “정보”라고 함)를 민간투자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본 협약의 정보공개 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하도록 한다.

③ 협약당사자 중 누구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의 공개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6.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시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④ 협약 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사,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금융기관 등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5. 협약당사자의 임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 ⑤ 본 조에 따른 공개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92 조 (통지)

-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2-15) 국방시설본부
 수신 : 민자사업과장
 참조 : 사업협상담당
 전화 : 02-748-4356
 팩스 : diabtl@mnd.go.kr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수신 : (가칭)푸른동화천주식회사
 참조 :
 전화 :
 팩스 :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3 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 본으로 작성되며 영문 본을 작성할 경우 한글 본이 우선한다.

제 94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95 조 (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 ② 본 협약은 본문과 별표 및 부록으로 구성되며, 별표 및 부록은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25년 07월 30일

국 방 시 설 본 부 본부장 위 정 태



(가칭)푸른동화천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진 오



<이하, 각 출자자 연대날인>

• 재무출자자

KIAMCO 비티엘 프로젝트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2호(일반)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중소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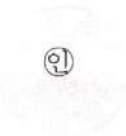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중 대표이사 **윤성태** 은행장
김성태 은행장
대리인 수탁부장 이 다 남



• 운영출자자

(주)세안텍스

대표이사 박 지 훈



(주)가화개발

대표이사 이 무 상



• 건설출자자

동부건설(주)

대표이사 윤 진 오



(주)동서

대표이사 김 래 선



벽산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 도 영



1. 凡在本行存款...
2. 凡在本行存款...
3. 凡在本行存款...

